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789-0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연구

2024. 01.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01. 31.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한 영 수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이상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정연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목 차

1.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3) 연구의 주요내용	4
(4)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10
2.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입법해설	13
(1) 목적(제1조)	13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제2조)	14
(3) 사·도계획의 수립·시행 등(제3조)	15
(4)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제4조)	16
(5)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5조)	18
(6)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6조)	21
(7)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제7조)	22
(8) 표준화사업의 내용(제8조)	23
(9)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 등(제9조)	25
(10)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해제 등(제10조)	27
(11)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등(제11조)	28
(12)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12조)	30
(13) 부칙	31
3.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입법해설	34
(1) 목적(제1조)	34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제2조)	35
(3)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3조)	35
(4)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제4조)	37
(5)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등(제5조)	38
(6)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제6조)	40
(7)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취소 등의 세부기준(제7조)	42
4. 별표 및 서식	44
(1) 시행령 별표 및 서식	44
(2)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47
[부록]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59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a) 스마트농업법의 제정

- 최근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농업인의 감소 및 고령화, 곡물 자급률 하락, 농가소득 정체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보급·확산에 노력해 왔음
- 이러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 및 보급·확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71)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법제도적 근거로서 2023년 7월 25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라 함)이 제정되어(법률 제19570호)되어, 2024년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스마트농업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제1조)
-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법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제8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제9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제14조 및 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스마트농업법은 총 6개의 장(총칙,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조성,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보칙, 별칙)과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그 전체적인 입법체계 및 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1】 스마트농업법의 입법체계 및 규정내용

장	조	규정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제8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9조	스마트농업관리사
	제10조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1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12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3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16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제17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8조	인·허가등의 의제
	제19조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제20조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제5장 보 칙	제21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	청문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6장 벌 칙	제25조	벌칙
부 칙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경과조치	

(b)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에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 이와 같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령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되는 경우,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게 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농업법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신규 제정법이라는 스마트농업법의 특성 상 하위법령의 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고 있음

- 일반적으로 법령의 “시행”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농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2024년 7월 25일 시행 예정인 스마트농업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입법과정 지원을 위한 대응자료 및 조문별 입법해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농업법 및 동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가 연구의 방법

(a) 문헌조사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을 위하여 이에 관한 기존의 논문이나 정책보고서 등의 연구성과, 각종 관련법령 및 정책자료 등을 기초로 조사·분석하는 문헌조사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추진하고자 함

(b) 입법론적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스마트농업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리적·입법기술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론적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추진하고자 함

(c) 실태조사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실무적 가치 및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학계 및 실무계의 법제전문가 등으로부터 법리적·입법기술적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실태조사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작성·제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농업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제정(안)의 작성 및 입법해설 등에 필요한 유사입법례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기타 법령도 연구의 대상으로 함

(3) 연구의 주요내용

(가) 과업내용의 재편

- 본 연구에서는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업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편의상 아래와 같이 관련성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추진하고자 함

【표-2】 본 연구의 과업내용 재편

과업지시서 상 과업 내용	본 연구의 과업내용 재편	재편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안 내 위임사항 분석하여 대통령령안, 부령안의 초안 마련 ◆상위법령 및 하위법령 간 정합성과 체계적 완결성 검토(3단 비교표 작성) ◆타 법령과의 관계, 특례규제 사항에 대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임사항 분석 및 하위법령(안) 입안 및 법리적 분석(보고서 2에서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작성이 핵심적 내용이며, 그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정합성과 체계적 완결성 검토, 타 법령간의 관계 및 특례규제 사항 등이 필요하므로 통합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문별 제정이유, 추진배경 등 제시(조문별제정이유서 작성) ◆조문별 유사 입법사례(조문별 표 작성) 및 국내외 입법사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위법령(안) 조문별 제정이유서(입법취지, 유사입법례 등) 작성(보고서 3과 4에서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해설(제정이유, 주요내용, 유사입법례 등)을 제공하므로 통합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안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자치분권사전협의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조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위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규제영향평가 등 입법과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입법과정에 필요한 각종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용어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요 쟁점사항별 하위법령 반영 시 예상 또는 제기된 문제점 파악 및 대응 시나리오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쟁점사항 도출 및 대응 시나리오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입법과정에 필요한 의견수렴 및 그 반영과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용어 재편

(나)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a) 법률체계 및 정합성 검토

- 법령 입안의 핵심은 헌법이념의 실현을 전제로 하여 법령이 헌법과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전체 법령체계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정확하게 해당 법령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에 있음
- 또한 법령 입안의 주요한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체계와 내용이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의미함

- 따라서 법령 입안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려는 법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스마트농업법과 같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법제도를 창설할 때에는 이 원칙의 엄격한 준수가 요청됨
-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농업법의 법률체계를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현황 또는 한계를 진단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하위법령 제정(안)의 헌법적 적합성을 강화함
- 즉, 일반적으로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해당 제정 법률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부터 스마트농업법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사항인지,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인지 등에 대하여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치유함으로써 법체계의 완결성을 강화함

(b) 위임사항 및 입법체계 설정

- (위임사항 분석) 스마트농업법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4조 및 제5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제6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제8조),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제9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제14조 및 제15조)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표-3】 스마트농업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스마트농업 육성법		시행령 위임사항	시행규칙 위임사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
제2조	정의	-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제6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공표에 관한 사항(제5항)
제5조	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시·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제6항)	-
제6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범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3항)	-
제7조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제8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항)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신청절차(제2항)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6항)
제9조	스마트농업관리사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기 위하여 취득해야 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 기술자격(제1항 제2호 가목)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제1항 제2호 나목)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제6항)
제10조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항)
제11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	-
제12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제2항)	-
제13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3항)	-
제14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거점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제9항 제3호)	-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10항)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육성지구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제8항 제3호)	-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9항)	
제16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제1항 제5호)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제3항)	
제17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4항)	-

제18조	인·허가등의 의제	-	-
제19조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	-
제20조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	-
제5장 보칙			
제21조	자료제출의 요청	-	-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
제23조	청문	-	-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시도지사 에 대한 권한 위임(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공공기관 등 에 대한 업무 위탁(제2항)	-
제6장 벌칙			
제25조	벌칙	-	-

- (입법체계 설정) 일반적으로 법령 본칙의 조문수가 많은 경우, 즉 30개조 이상인 경우에는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장”(장의 조문수가 많으면 절·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상위법령에서 “장” 또는 “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도 “장” 또는 “절”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20)
- 이와 같이 하위법령의 입법체계는 법률에서 장·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해당하며, 스마트농업법의 경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스마트농업법의 16개 조항에서 시행령에, 7개 조항에서 시행규칙에 각각 위임하고 있어, 전체적인 위임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스마트농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는 “장”의 구분 없이 조문만으로 구성함

(c) 하위법령 제정(안) 작성기준

-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구체적 입안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 및 정부입법 심사기관인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 (소관사항 준수의 원칙)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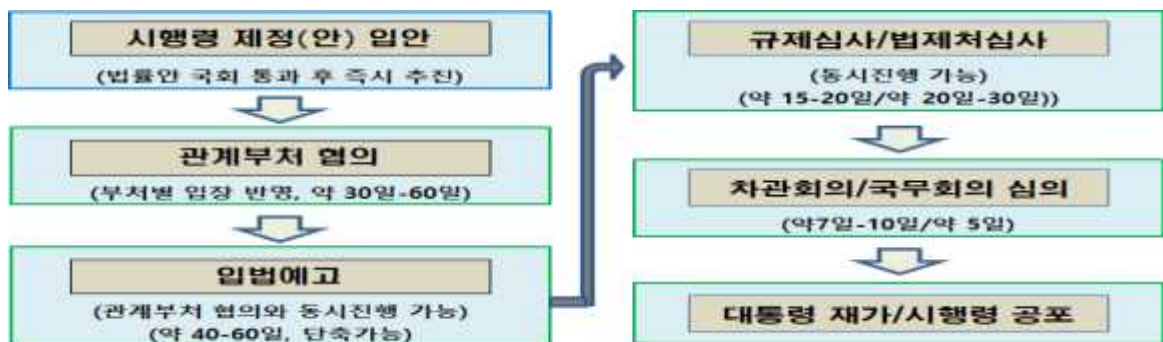
- 또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사항 준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상위법령 우선의 원칙) 이것은 모든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하나의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 원칙은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의 입안에서도 준수되어야 함
-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74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이상에서 서술한 법령입안의 헌법적 기준에 따라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안함으로써,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입법기술적 완성도 및 실무적 가치를 제고하고, 헌법적 적합성을 강화함

(다) 입법지원 대응자료 및 입법해설 제공

(a) 입법지원 대응자료 제공

- (하위법령 입법과정)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의 경우, 하위법령(안) 입안,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대통령령), 대통령 재가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전체적인 입법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1】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입법절차



* 참고로, 스마트농업법 시행령(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헌법 제89조 제3호),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부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서명·공포하면 됨

- (입법과정 대응지원) 이와 같이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자치분권사전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치게 됨
- 예컨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에서는 신설된 규제의 타당성 및 영향 심사가 행해지고, 법제처 심사에서는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별 균등 교육기회 제공 등이 행해질 예정임
- 이러한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의 입법과정에서는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요청이 예상되는 바, 30년 이상 축적된 네트워크를 활용,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한국행정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적시에 관련 대응자료를 작성·제시함

(b) 조문별 입법해설 제공

- 전술한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의 입법과정에서는 하위법령 조문별 제정이유, 유사 입법례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조문, 입법취지, 주요내용, 입법사례”로 구성되는 조문별 입법해설을 제공함
- 이러한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조문별 입법해설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기타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경험을 충분히 살려, 완성도 높은 입법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함

(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도출

(a)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스마트농업법 및 동 하위법령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령의 현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함
- 또한 필요한 경우,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입안과정에서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 중 반영 가능한 의견을 반영함

(b) 쟁점사항 도출 및 쟁점별 토론회 개최

- 입법예고 기간 또는 전술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법리적·입법기술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쟁점별로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의 하위법령 반영방안을 모색함

- 또한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법리적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계 및 입법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가회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반영 가능한 사항을 수시로 반영함

(c) 하위법령 반영시 장단점 분석 및 시나리오 마련

- 쟁점별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도출된 반영 가능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반영에 따른 장단점을 법리적·입법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발주처와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쟁점조문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영 시 예상되는 장단점 및 필요한 경우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전문가회의 또는 워크숍이나 서면자문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단점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거나 대안의 적절성 등을 진단하고자 함

(4)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가) 연구의 추진체계

(a) 연구팀 구성방안

-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구성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그 밖에 상시적으로 자문 또는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 10명 내외)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그림-2】 연구팀 구성방안



(b) 연구진 역할분담

- 책임연구원은 연구를 총괄하고,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최적 입법모델을 수립하며, 수립된 입법모델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입법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연구원은 하위법령 제정(안) 작성·검토 및 입법과정 대응지원 등, 연구보조원은 연구지원 및 행정지원, 자문위원단은 연구내용 및 성과의 적절성 검토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5】 연구진 역할분담

구 분	업무분장 내역	비 고
책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총괄 및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최적모델 수립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의 법리적 분석 및 입법기술적 타당성 검토 •토론회 및 전문가회의 등 주관 	1명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작성 및 검토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입법과정 지원 및 대응 자료 작성 및 검토 •입법 취지 및 유사 입법례 등 입법해설의 작성 및 검토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도출 	4명
자문위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내용의 타당성 점검 •연구방향의 합리성 및 연구성과의 적절성 검증 •전문가회의 및 토론회 등에의 참석 및 의견 개진 	10명 내외
연구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행정업무 수행 •보고서, 자료집 등 편집 및 발간업무 수행 	1명

(나) 연구의 기대효과

(a) 기대효과

- 연구의 최종 결과물로 제시되는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스마트농업법 및 동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농업법의 원활한 시행에 따라 고령화·저출산 및 인구 유출로 인한 농업·농촌의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b) 활용방안

- 본 연구의 최성 성과물로 제시되는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장기적 관점의 스마트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입법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5) 추진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계약 후)			
		1월	2월	3월	4월
1. 관련자료 수집 및 연구진 업무분장		■→			
2. 위임사항 분석 및 하위법령(안) 입안 및 법리적 분석	2-1	■■■■→			
	2-2	■■■■■■■■→			
	2-3	■■■■■■■■■■→			
3. 입법과정 대응자료 제시 및 입	3-1		■■■■■■■■■■→		

법해설서 작성	3-2			■■■■■■■■■■→	
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쟁점사항 도출 및 대응 시나리오 마련	4-1			■■■■→	
	4-2			■■■■→	
	4-3			■■■■→	
5.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		○
추진진도 (%)		10	60	80	100

- 2-1. 상위법령 및 하위법령 간 정합성과 체계적 완결성 검토
- 2-2. 타 법령과의 관계, 특례·규제 사항에 대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검토
- 2-3.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작성·검토
- 3-1.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법제처 심사 등에 필요한 대응자료
- 3-2. 하위법령(안) 제정 이유 등 입법해설
- 4-1. 지자체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4-2.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쟁점사항 도출 및 쟁점별 토론회 개최
- 4-3. 주요 쟁점사항 반영 시 장단점 분석 및 시나리오 마련

2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입법해설

(1) 목적(제1조)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제정이유

- 목적규정은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해당 법령이 달성하려는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히고,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의 경우도 목적규정을 두어 입법 목적 및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령의 개별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이 스마트농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스마트농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함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해석·집행할 때 개별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농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제2조)

시행령(안)
<p>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4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제1항), 매년 시행계획을(제3항)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제6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제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본계획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제1항),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제2항)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목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원활한 정책 시행을 담보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p>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p> <p>②-③ <생략></p>

법령명	조문내용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생략>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등(제3조)

시행령(안)
<p>제3조(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1항), 그 밖의 시·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제6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시·도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제1항),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항)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계획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4항)

(㉔) 입법효과

- 시·도계획의 수립지침의 통보 및 수정·보완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도계획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계획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㉕)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한 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제4조)

시행령(안)
<p>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개발·수립 및 시행 지원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등 지원 4. 스마트농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수직농장(식물공장) 및 우주농업(space farming)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활성화 지원

<p>6.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지원</p> <p>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6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개발·수립 및 시행 지원(제1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지원(제2호),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등 지원(제3조) 등을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관련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p>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에 따른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관리 지원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지원 4.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5.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6. 주소정보를 활용한 창업 공모전 시행 등 주소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창업 지원 7. 외국 주소정보 수집 및 분석 8. 그 밖에 주소정보의 수집·가공·제공·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시·도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법령명	조문내용
	1.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관리 지원 2.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지원 3.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4.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5. 제5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6. 제5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항의 지원 7. 제5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8.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의 지원 9. 그 밖에 주소정보의 활용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5)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5조)

시행령(안)
<p>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이와 비슷한 사업운영규정 2.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3. 제5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최근 2년간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6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별표 1]로 정하도록 하고(제1항),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도록 함(제2항)
- 또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규정하고(제3항),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의 지정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함(제4항)
-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제5항),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공고하도록 규정함(제6항)

(타)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정과정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강화하고, 지정서의 발급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도모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p>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4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 나. 지원센터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일 것 다. 삭제 <2021. 1. 5.> 라.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p>②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호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 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6.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8. 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p>

법령명	조문내용
	<p>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p> <p>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지원센터 사업의 범위 및 내용 <p>⑦ 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2. 제6항 각 호의 사항 <p>⑧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p> <p>⑨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p> <p>⑩ 제9항에 따른 지정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6)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6조)

시행령(안)
<p>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정형 온실, 수직농장(식물공장) 등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 2. 스마트농업 도입 후 생산성·노동력·소득 변화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매출액 및 기술수준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③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할 항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p>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7조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정책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제1항),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제1항), 현지조사·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 실태조사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제2항), 조사항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의 활용 등을 규정함(제3항)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 관련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정책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도모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2.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3.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4.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한다.

(7)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제7조)

시행령(안)	제7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시설원에 기술사 및 축산 기술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	---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9조에서는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될 수 있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시설원에 기술사 및 축산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명시함으로써,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도모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p> <p>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8) 표준화사업의 내용(제8조)

시행령(안)
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정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 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이하 “스마트농업 표준”이라고 한다) 요소 발굴 및 표준 제·개정
2.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설계 및 컨설팅 지원
3.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제품개선 및 현장실증 지원
4.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제품검정·인증 지원
5. 스마트농업 표준에 관한 홍보
6. 스마트농업 표준 관련 전문교육
7.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 제품 및 서비스 보급 지원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12조에서는 스마트농업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그 표준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 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 요소 발굴 및 표준 제·개정(제1호),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설계 및 컨설팅 지원(제2호),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제품개선 및 현장실증 지원(제3호) 등을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스마트농업 표준 보급 등을 통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령명	조문내용
시행령	1. 국제수준의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협력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 또는 특허 선점을 위한 관련 연구·조사, 분석 및 대응 체계의 구축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등 충족 여부 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지원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 동향 분석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 등(제9조)

시행령(안)
<p>제9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 등) ① 법 제1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관할 시·도지사가 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14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근거(제1항), 지정 요건(제3항) 및 지정 해제(제9항) 등을 규정하면서,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제할 수 있는 사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제9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서,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함(제1항)
- 또한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그 거점단지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제3항), 그 밖에 거점단지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4항)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해제 사유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에 최적화된 농업인의 육성, 스마트농업 관련기술의 실증,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4조(관리구역의 해제) ① 법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의 수행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보호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홍수 예방 등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p>② 법 제1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설치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갯벌휴식구역의 훼손된 갯벌생태계가 복원된 경우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할구역 내의 관리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p>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②-④ (생략)</p>

(10)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해제 등(제10조)

시행령(안)

제10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산면적(실제 재배면적을 적용하고, 생산과 연계된 지구 내 도로, 선별장 등은 생산면적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

②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관할 시·도지사가 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15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밖에 육성지구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제8항 제3호),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 한편, 스마트농업법 제15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스마트농업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제1항), 그 밖에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제2항), 지정을 해제한 경우의 고시 및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제3항)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기준 및 해제사유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집적화 및 지역단위로의 확산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p>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통신·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p>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목적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 향후 지원·육성계획 <p>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등(제11조)

시행령(안)
<p>제11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단서 및</p>

제2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16조에서는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될 수 있는 기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함(제1항)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제2항)

(다) 입법효과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p>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p> <p>가. 공공기관</p> <p>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p> <p>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p> <p>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p> <p>②-③ (생략)</p>

법령명	조문내용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2)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12조)

시행령(안)
<p>제12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p>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17조에서는 지구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제1항 후단)과 승인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변경승인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등을 규정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제2항)

(다) 입법효과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지구조성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승인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p>제48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③ (생략)</p> <p>④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p>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 2.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5.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6.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 7.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

(13) 부칙

시행령(안)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p>

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은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정하는 시·도계획 수립시점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정이유

-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는 법제 활동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내용은 법령의 본칙에 규정되지만, 그 밖에도 법제도가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종전의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나 경과적인 조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즉,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법령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기본 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에만 적용한다든지 특정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본칙과는 달리 잠정적인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인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로부터 두어지는 규정들은 본칙을 모두 규정한 다음에 부칙이라는 표제 하에 따로 모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부칙규정이라 함
- 결국,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하는 부분을 말함
- 스마트농업법은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로서, 스마트농업법 시행령도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질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부칙을 두어 시행일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정내용

- (시행일) 스마트농업법스마트농업법은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로서, 부칙 제1조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즉 시행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법 시행령도 스마트농업법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례)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를 2024년 12월 30일까지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최초로 정하는 시·도계획 수립지침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

(㉔)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의 시행일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시행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을 담보하고자 함

(㉕)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에 관한 특례) 2021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상법 시행령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기상청장은 2007년도부터 개시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입법해설

(1) 목적(제1조)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제정이유

- 목적규정은 법령의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해당 법령이 달성하려는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히고, 개별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의 경우도 목적규정을 두어 입법 목적 및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령의 개별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의 입법 목적이 스마트농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스마트농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함

(다) 입법효과

- 농촌공간계획법 시행규칙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농촌공간계획법 시행규칙을 해석·집행할 때 개별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제2조)

시행규칙(안)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제5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경우의 공표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농업 및 관련산업의 전략적·체계적 육성에 관한 정부 등의 정책적 의지와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관련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음

(3)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3조)

시행규칙(안)

제3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지도·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스마트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운영계획
 4. 스마트농업데이터 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농촌공간계획법 제8조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제2항, 제2항, 제6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별표 1로 정하고(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제4항) 등을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에선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 지도·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4)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제4조)

시행규칙(안)
<p>제4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이란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 제3호가목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다.</p>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9조에서는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과정을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으로 규정함(제1항)
- 또한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의 경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제2항), 그 밖의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화함(제3항)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에서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한 관련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p> <p>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5)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등(제5조)

시행규칙(안)
<p>제5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p>

1. 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2. 제2차시험: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
-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등급에 따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2차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시행되는 제1차시험을 1회 면제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9조에서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제6항),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을 별표 2로 규정하고(제1항), 그 밖의 자격시험의 구분,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제2항부터 제6항)을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에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의 관리 및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p>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2. 제2차시험: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p>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p> <p>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p> <p>⑤ 농촌진흥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p> <p>⑥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6)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제6조)

시행규칙(안)
<p>제6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2.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 사진으로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p>③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p>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사진(제2항제3호의 사진을 말한다) 1장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의 기재 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바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9조에서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 외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제1항), 별지 제5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제2항),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제3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에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의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정책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함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5(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9. 22.> 2. 삭제 <2017. 9. 22.>

법령명	조문내용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문 자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p> <p>③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p>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③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기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7)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취소 등의 세부기준(제7조)

시행규칙(안)	<p>제7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u>별표 3</u>과 같다.</p>
---------	---

(가)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법 제10조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해당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제3항),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나) 제정내용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 3으로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에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입법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별표 및 서식

(1) 시행령 별표 및 서식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시설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 및 회의실을 확보할 것
인력	스마트농업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와 비슷한 경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이와 비슷한 사업운영규정 2.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3.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최근 2년간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 육성·지원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

1. 명 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스마트농업 지도 및 교수 요원과 운영요원

구분	기준인원	자격요건	비고
지도 및 교수요원	3명 이상 (1명 이상 상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이하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운영요원	3명 이상	-	

2.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 가.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강의실
- 나. 스마트농업 실습 및 체험장: 1,000제곱미터 이상
- 다. 스마트농업 관련 농자재 보관시설: 50제곱미터 이상
- 라. 그 밖에 교육 및 실습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방음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

3.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운영

- 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 나.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80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시간에는 4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이 포함될 것

다.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시간)

구분	교육 내용	교육시간 (80)		비고
		이론	실습	
스마트농업 이해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가치, 스마트농업의 개념, 스마트농업의 현황 및 육성 시책 등	40	40	
스마트농업 관련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스마트농업 관련법령의 이해			
스마트농업 기술	작물 선택, 종자 및 종묘(種苗) 선택, 파종과 육묘(育苗) 및 번식, 양분·수분 관리, 병해충 관리, 잡초 관리, 정지(整枝) 및 결실 관리,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등			
스마트농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스마트농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농사요령 보급 등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및 농자재 관리	스마트팜 조성, 퇴비 및 비료 만들기, 친환경 병해충 방제약 만들기, 농기구 사용 및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리기준 등			

4. 스마트농업데이터 제공 프로그램 보유

- 가. 텃밭 소개, 참여방법 안내, 신청·계약 등을 인터넷으로 지원할 것
- 나. 스마트농업 농자재 보급 및 사용한 농자재 회수 코너를 마련할 것
- 다. 작물별 농사요령 안내, 스마트농업에 적합한 작물소개,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상담 및 컨설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5. 수강료 책정 등

- 가.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적으로 책정할 것
- 나.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방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강생에게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하지 않을 것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스마트농업 지도·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스마트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운영계획 4. 스마트농업데이터 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 육성·지원 담당부서)

■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1. 명 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응시자격

자격 분야	응시자격
가. 원예 분야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업무(농업 분야의 전문기술을 활용한 재배·생산·가공 등의 업무,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설비·시스템 등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업무 또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지도·서비스를 제공·관리하는 업무 등을 말하며, 이하 “스마트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축산 분야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또는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스마트농업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위 표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 및 스마트농업관련업무의 범위 등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험과목

자격 분야	시험방식	시험과목
가. 원예 분야	1) 제1차시험	가) 원예 분야 스마트농업의 이해 및 시설·장비 구축·관리
		나) 원예 분야 스마트농업 운영 및 관리
		다) 원예 분야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분석
		라) 원예 분야 상담 및 교육방법론
	2) 제2차시험	원예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실무
나. 축산 분야	1) 제1차시험	가)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의 이해 및 시설·장비 구축·관리
		나)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 운영 및 관리
		다)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분석
		라) 축산 분야 상담 및 교육방법론
	2) 제2차시험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실무

3. 합격기준: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제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2차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응시번호											사진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것)
응시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응시분야	[]원에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사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사										
제1차시험	[] 해당 없음 [] 직전 회차 시험의 제1차시험 합격자										
면제 여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해당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자르는 선

제 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원에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사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사			
시험 일시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응시원서 작성방법

1.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성명: 한글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휴대전화번호: 필요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하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5.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발생한 착오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m²]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1. 성명:

2. 생년월일:

3. 자격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사 분야

사 진
3.5cm×4.5cm

위 사람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준을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처분(자격정지처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 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다.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 제10조제1항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3호	2년	3년	
라.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 제4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부록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문자·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p>		
<p>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6.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p> <p>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p> <p>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p> <p>9.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p>
<p>제5조(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자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이 기본계</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개발·수립 및 시행 지원</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 기반 조성 지원</p> <p>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등 지원</p> <p>4. 스마트농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p> <p>5. 수직농장(식물공장) 및 우주농업(space farming)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활성화 지원</p> <p>6.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지원</p> <p>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이와 비슷한 사업운영규정 2.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3. 제5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최근 2년간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⑦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정형 온실, 수직농장(식물공장) 등 스마트 농업의 유형별 현황 2. 스마트농업 도입 후 생산성·노동력·소득 변화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매출액 및 기술수준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③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할 항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p>	
<p>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p>		
<p>제8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 지도·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스마트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⑥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스마트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 4. 스마트농업데이터 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p>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스</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①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것 	<p>제7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시설원에 기술사 및 축산 기술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p>제4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이란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 제3호가목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p>④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누구든지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⑥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2. 제2차시험: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 <p>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p> <p>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등급에 따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2차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져 시행되는 제1차시험을 1회 면제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그 밖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받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2.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 사진으로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p>③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사진(제2항제3호의 사진을 말한다) 1장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바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p>
<p>제10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스마트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p> <p>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표준화 사업의 내용) 정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 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이하 “스마트농업 표준”이라고 한다) 요소 발굴 및 표준 제·개정 2.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설계 및 컨설팅 지원 3.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제품개선 및 현장실증 지원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제품검정·인증 지원 5. 스마트농업 표준에 관한 홍보 6. 스마트농업 표준 관련 전문교육 7.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 제품 및 서비스 보급 지원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플랫폼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露地) 재배단지를 갖출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스마트농업을 시험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임대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재배단지를 갖출 것</p> <p>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을 위한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재배단지를 갖출 것</p> <p>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한 전산 장비·시설을 갖출 것</p> <p>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점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거점단지의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3. 거점단지의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계획 4. 거점단지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한 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거점단지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거점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 	<p>제9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 등) ① 법 제1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관할 시·도지사가 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스마트농업 지원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⑩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거점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p>	
<p>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p>		
<p>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 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 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 육성지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재원 확보방 안 5. 육성지구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 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 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려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육성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 밖에 육성지구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제10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갖춘 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면적(실제 재배면적을 적용하고, 생산과 연계된 지구 내 도로, 선별장 등은 생산면적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 <p>②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관할 시·도지사가 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⑨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①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지구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한국농어촌공사</p> <p>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p>	<p>제11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은 경우</p> <p>2.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p> <p>3.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구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2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p>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지구조</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4. 주요 사업내용 5.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 시행기간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7. 그 밖에 육성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승인</p> <p>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p> <p>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p> <p>8.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p> <p>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석채취신고·토사채취신고</p> <p>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사용 허가</p> <p>1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의 행위허가</p> <p>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p>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협의</p> <p>1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p> <p>16.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협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p> <p>1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p> <p>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대학·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제5장 보칙		
<p>제21조(자료제출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단지 및 육성 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제8항제2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이 끝날 때에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p>		
<p>제2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p>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일부를 공공기관이 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6장 벌칙</p>		
<p>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 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 증을 대여한 사람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 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 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p>부칙</p>	<p>부칙</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이 규칙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에 관한 경과조</p>	<p>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p>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p>치)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거점단지로 보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적용한다.</p>	<p>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정하는 시·도계획 수립지침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